

제10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채택된 건의문

1971년 9월 16일 부터 9월 18일 까지 3일간 제10회 전국 도서관 대회를 전국에 약 600명의 도서관인이 모인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대회에 참석한 도서관인들은 조국 근대화를 위한 "지적 자원 개발과 정신혁명"을 위하여 도서관인이 맡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우리의 자각과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짐 했습니다.

전국의 각 관중별 전체 도서관인이 국가의 문화 및 경제발전과 나아가 조국근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문헌정보자료의 제공과 활용을 돕는 일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재확인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국가의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근대화 하려는데 국내외적으로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들이 가로 놓여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도서관인들은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데 보다 발전적인 참여를 하고자 하오나 별칭 내용과 같은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보다 더 바람직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통감하여 관계 당국에 건의하오니 국가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건의 내용은 우리 관계에서 기회있을 때 마다 수차에 걸쳐 건의된 사항들이오니 금번에는 꼭 해결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1년 9월 18일
전국도서관인 일동

건의 내용

1. 공공도서관 증설 및 운영의 정상화 요망

1968년도에 문교부가 수립한 공공도서관 설치 5개년 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전국의 시, 구, 군 마다 한개의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이미 설치된 도서관 및 새로 설치될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속청을 일원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각급 도서관 사서직 임용에 대한 법적 보장 및 처우 개선 요망

가. 사서직 공무원에 대한 개선 요망 사항

a. 사서직급 분류의 재 조정

ㄱ. 공무원 임용령 제22조에 의한 별표 1의 "1급 내지 5급 직급표"에 사서직이 행정직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이를 개정하여 학사직군에 분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서직을 독립직군으로 분류하고 현재의 5등급에서 8등급으로 늘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 관계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ㄴ. 독립직군으로 분류할 때는 직렬 직급을 분류하여 학사직군 다음 항으로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b.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도 사서직종을 삽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 사서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요망

사서직 공무원은 도서관법에 규정된 동일한 자격과 직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만이 수당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헌법에 규정된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도서관의 사명 수행과 직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는 절박한 문제로서 시급히 시정해 주셔서 모든 사서직 공무원에게 균등한 대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 지급에 따르는 관계 법률

"공무원 수당 규정"

(1970.4.6. 대통령령 제4850호
개정 1970.5.22 대통령령 제5,018호)

등 규정 제10호 특수 근무수당 지급규정에 의한 제12조의 지급종류중(10)항 "사서수당"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	개정(안)
제22조(사서수당) (1) 국립중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 공무원으로서 직접 사서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 이상은 월 6,000원 이하의, 4급은 월 4,500원 이하의, 5급은 월 3,000원이	제22조(사서수당) (1)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은 월 6,000원 이하의 4급은 월 4,500원 이하의 5급은 월 3,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2) 건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	---

d. "교육공무원법"중 "사서교사"의 자격기준과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 요망.

ㄱ. 교육공무원법 제3조 자격기준 별표1의 사서교사의 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1,2급으로 구분하고 중등학교와 국민학교별로 정할 것.

구분	중 등 학 교	국 민 학 교	특수학원 유치원
사서교사 (1급)	1. 중등정교사(二급)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사서교사양성 강습을 받은 자 2. 중학교 사서교사(二급)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 강습을 받은 자	1. 국민학교 정교사(二급)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사서교사 양성 강습을 받은 자 2. 국민학교 정교사(二급)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 강습을 받은 자	
	1. 중등준교사의 자격증 소지자로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사서교사 양성 강습을 받은 자 2. 대학 졸업자로 재학중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1. 국민학교 준교사의 자격증 소지자로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사서교사 양성 강습을 받은 자 2. 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ㄴ.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 經歷年數 加減表

職 名 別	學 歷 別		師範大學卒業	大學卒業	中等學校準教師檢定合格
	學 歷 別	學 歷 別			
中 等 學 校	校長, 校監, 教導教師, 1級正教師, 1級司書教師		3	4	5
	2級正教師, 2級司書教師		0	1	2
	準教師		△	2 △	1
國 民 學 校	校長, 校監, 1級正教師, 1級司書教師		△	2 △	1
	2級正教師, 2級司書教師		△	5 △	4 △

를 1,2級 司書教師는 1,2級 正教師와 同一하게 改定할 것
 ㄷ. 改定理由

1) 國民學校 司書教師資格基準 設定의 理由

① 도서관법 제25조에 의하여 국민학교에도 도서관(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②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국민학교에는 1인이상의 사서교사나 1인이상의 司書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③ 국민학교에 있어서 圖書館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민학교의 사서교사 확보문제는 긴요한 바이나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 이상의 소지자만이 사서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으로는 국민학교의 사서교사 확보가 불가능 함

2) 중등학교, 국민학교, 사서교사 자격기준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야 되는 이유

① 사서교사의 기본적인 요건이 교사로서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교도서관에 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자라야 하며

② 사서교사의 실질적인 교육활동이 일반교사의 활동보다도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교사가 사서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재교육을 받은 까닭에 자격면에서 격하되는 모순을 나타내고 있다.

③ 일반교사가 재교육을 통하여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다른 어떠한 교직분야보다도 부단한 연수가 더욱 필요한 사서교사도 재교육을 통하여 1급 사서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땅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④ 학교도서관 실무경험이 많고 유능한 유자격도서관 담당교사는 1급 정교사이므로 사서교사로 임명받으면 2급정교사와 같은 호봉을 받게 되어 임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ㄹ. 국민학교 사서교사 자격기준 제정요망

도서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학교에도 도서관(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제6조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도서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국민학교에는 1인이상의 사서교사나 1인이상의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학교에 있어서 도서관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민학교의 사서교사의 확보문제는 긴요한바이나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 이상의 소지자만이 사서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현행법으로는 국민학교의 사서교사 확보가 불가능하여 교육공무원법 제3조 자격기준 별표 1의 사서교사 자격기준을 고쳐 사서교사의 자격기준을 1,2급으로 구분하여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학도서관 직제 확립과 TO증배

도서관법이 제정공포(1963. 10. 28)된지도 이미 8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을 제외한 전국 대학도서관에는 아직껏 직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점은 대학도서관의 기본적 운영면에 있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더우기 사서적의 수적(數的) 부족으로 인하여 가장 기초적인 기능마저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대학도서관의 육성강화는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려는 문교부의 시책과 직결되고 있음을 감안하셔서 도서관인들의 숙원인 대학도서관 직제확립 및 TO증배가 성취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정부 각종 사업부서에 도서관 설치 및 전문직 배치

급속도로 변천하는 사회와 전문화되어가는 시대에 따른 효율적인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롭고 신속한 정보의 획득이 요구되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따라서 오늘 날 근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나라의 국가행정수행에 있어 요구되는 모든 문헌정보의 수집, 정리 제공의 중심기관인 정부의 각급 행정부에 설치하고 전문적 사서를 배치하여 국가의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조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3. 학교도서관 육성을 위한 장학 행정 체계의 확립

도서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차 설립될 학교도서관을 지도육성하고 교육과정과 연관된 운영으로 학교 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봉사기 이루어 지도록 장학체계의 확립이 요청되는바, 이를 위하여 중앙에는 도서관담당장학관을 시·도 교육위원회에는 학교도서관을 담당할 장학사(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사서자격증을 소지한자)를 배정하여 장학체계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학교양학부과정에 도서관학 및 문헌이용법 강좌 설치 요망

대학교육이 연구 조사 활동을 기간으로 삼는 것인만치 대학생들이 인류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한 각종 도서관자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대학생들은 문헌 및 도서관 이용법이 미숙하여 그것을 이용한 자학자습의 습관을 기

르지 못하고 교수의 강의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예와 같이 전국 각 대학에 도서관학 및 문헌이용법강과를 교양과목으로 설치하여 교육함으로써 대학생들이 도서관의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용하는 지식을 터득 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 도서관 운영 여건의 개선요망

각급 도서관의 운영비와 도서구입비가 부족하여 새로운 도서의 구입이 어려움은 물론 도서관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 도서관에 도서구입구비 및 예산을 대폭 증대시켜 신간도서와 외국의 새로운 자료가 수집제공되고 도서관이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바라는 바입니다.

특히 초, 중, 고등학교에서 징수하고 있는 육성회비 중에 도서비 항목을 삽입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도서관법 개정요망

현행 도서관법은 1963년 10월 28일 제정 공포되어 그로부터 이미 8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8년전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도서관 사업의 개혁과 기초작업을 위해서 母法으로 요구되었던 동법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는 동안에 사회의 발전은 물론 도서관 사업의 발전에 따라 현실과 이완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또 새로운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용한 법으로서의 보완과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도서관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기본적인 한 시설임을 감안할 때 모법인 도서관법의 개정이 시급히 요청되는 바입니다.(동법 개정안은 본 협회에 법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 연구 검토 중에 있음)

7. 대 규모의 국립도서관 설치요망

국가와 민족문화 발전에 요구되는 모든 분야의 문헌정보를 국가적 단위에서 수집 활용할 수 있는 國家書誌活動, 綜合目錄의 作成, 印刷카아드의 作成, 配付, 貴重資料의 마이크로화 등 국가규모의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의 국립 도서관의 설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즉 조국근대화작업 특히 경제, 산업, 과학, 기술 등 모든 분야의 개발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文獻情報의 요청을 국가적 규모에서 담당하여 수행해 갈 수 있는 국립도서관의 설치를 바랍니다.